녹지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및 제49조를 위반하여 녹지의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, 행위·소유자 미상으로 위반자에 대해 우편물을 송부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25일





- 1. 공 고 명: 녹지 내 불법경작, 무단점유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: 2024. 9. 25 . ~ 2024. 10. 8.(14일간)
- 3. 공고 및 게시장소: 인터넷 홈페이지, 석문면사무소 및 인근아파트 게시판
- 4. 공시송달 대상(불법 현황)

위 치		비고				
소재지	번지	행위자	주소	불법내용		
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	2006 (경관녹지)	미상	미상	불법경작, 무단적치(농기구, 대야, 비료, 물통 등)		

- 5. 공시송달 공고내용 [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]
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38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녹지 내 불법 행위를 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25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하오니 <u>2024. 10. 8.(화)까지</u>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만약 기한 내에 자전철거 및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거나 철거에 대한 이의 신청,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, 「행정대집행법」제2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점유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,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나,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6. 의견제출: 당진시 시설관리사업소 산단관리팀(041-360-6535)

- 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붙임 1.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1부.
 - 2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 - 3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

당 진 시

수 신미상

제 목 녹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녹지 내 무단경작 및 무단점유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명령				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 미상									
	주 소 미상				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2006번지 녹지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				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2006번지 녹지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명령				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49조									
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	당진시	부서명	시설관리사업소	담당자	박다여			
		주소	당진시 당진중앙2로 53-11, 2층			전화번호	041-360-6	6535		
		전자우편 주소	haema1993@korea.kr			팩스번호	041-360-6	6539		
	제출기한		2024년 10월 8일까지							

<의견제출시 유의사항>

- 1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3.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당 진